

2-1. 저소득층 어르신(70세이상) 건강효도비 지급

가족행복과 노인복지계 / 김정미 ☎ 610-4364
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 하였으며(목표 진도율 50%), 대상자 선정하여 노인의 날 (10.2.)이전 지급 완료하였음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년 ~ 2026년 (매년 10월중, 연 1회)
- 지원대상 :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
 - ▷ 지원기준일 현재 수영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사업내용 : 1인당 건강효도비 100천원/연 지원
- 총사업비 : 1,660백만원(구비 1,660) *당초 사업비 : 1,460백만원(구비 1,460)

공약사업 추진사항

- 사업이행여부

| 추진여부 | | | | 추진 공정률(%)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완료 | 이행 후 계속추진 | 정상추진 | 일부추진 | 2023.12.31.현재 |
| | ○ | | | 100% |

- 사업비 투자정도

(단위 : 백만원)

| 계획예산(총사업비) | | | | | 투입(확보)예산 | | | | |
|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|
| 계 | 국비 | 시비 | 구비 | 기타 | 계 | 국비 | 시비 | 구비 | 기타 |
| 1,660 | | | 1,660 | | 440 | | | 440 | |

|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계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
| 331 | | 331 | | | |

□ 세부추진내용

○ 2022~2023년

- ▷ '22.12. : '23년 본예산 편성
- ▷ '22. 7.~'23. 3. :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
- ▷ '23. 8.~12. : 효도비 지급(3,308명, 330,800천원)

□ 문제점 및 개선방안

○ 문제점(미흡한점)

- ▷ 행복이음 상 사회보장급여로 등록되지 않아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계좌입금 불가

○ 개선방안

- ▷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사회보장급여로 연계 예정

□ 향후추진계획

- '24. 1.~ 2. : 사회보장급여 연계 협의
- '24. 5.~ 6. : '24년 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증가폭 확인 및 필요시 추경 반영
- '24. 8.~10. : '24년도 건강효도비 대상자 선정 및 지원